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53,215,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810,3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5. [redacted]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1. 9.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을 91,367,098,566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3,690,600원, 지방교육세 131,639,450원, 농어촌특별세 885,510원 합계 2,436,215,5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553,169,900원(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며,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53,215,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810,3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 합계 56,044,6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달리 대상 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를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이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 성립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아닌 분양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기부채납용 부동산 공급가액의 대체물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닌 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키면 분양계약의 형태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종전의 지방세 행정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 과세관청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관행을 유지해오다가 행정자치부의 2015. 12. 11.자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1)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4. 8. 13. 납부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고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용지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처분권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이 있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기는 한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이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과는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이상, 원고로서는 해당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곤란해지는 이상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고,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필요한 비용과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액수가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분양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와 관련된 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제2조 제3호), 다만 구체적인 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있어 그 대상자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하면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분양가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신축 · 분양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다만 그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분담금의 액수를 분양 후 분양가격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 취득에 관한 비용이라 할 것이지 이를 분양대행수수료와 마찬가지의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학교용지부담금은 초 · 중 · 고등학교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의 하나에 해당하는데, 구 학교용지법이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야기하였으므로 학교용지 확보라는 과제의 달성에 관하여 조세외적으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가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사업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분양대금 수령에 의한 것이나 이는 공동주택의 건설 및 그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 취득과는 무관한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과 무관하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문언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우라도 그 비용의 성질이나 관련 법령에서 그 비용을 부과하는 취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⑥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데 그 도입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사람들의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성격상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⑦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역시 일단 부과되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대가 혹은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참조).

⑧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같이 사전분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설령 사전분양과 사후분양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시기가 달라지고, 그 결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의 분양방법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한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경위 및 내용에 앞서 본 사실, 증거들 및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같은 체계로 개정되었다.

② 행정자치부가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에 대한 비용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이에 따른 과세실무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이 2010. 1. 1.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개정되자, 행정자치부가 2015. 12. 11.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와 주식회사 C이 2014년경에 이미 [redacted]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역시 [redacted]구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4. 9. 25. 무렵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과세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유권해석이 있기 전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4. 4. 14. 울산 남구 D 취득세 과세자료를 작성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시켰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2015. 9. 25.경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과세 관행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4

6.「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끝.